

이용약관 변경 공지

(주)굿텔레콤의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변경 시행일

- 공고 일자 : 25년 7월 8일
- 시행 일자 : 25년 7월 15일

2. 변경 대상 : (주)굿텔레콤 서비스 이용 고객

3.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주)굿텔레콤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주)굿텔레콤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조 ~ 제 7조 (생략)	제 1조 ~ 제 7조 (현행과 동일)
<u>제7_1조 (서비스의 이용 장애)</u>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회사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ISP업체 및 네트워크 기기의 장애로 발생된 문제는 책임이 없습니다. 1) 이용자가 직접 설치한 단말 장비가 전기통신자재 형식승인 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내지 회사의 서비스 <u>기준에 부합하지 않음</u> 으로써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 2) APP 사용 권장사양에 <u>부합하지 않는</u> 스마트 기기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	<u>제 8조 (서비스의 이용 장애)</u>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회사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ISP 업체 및 네트워크 기기의 장애로 발생된 문제는 책임이 없습니다. 1) 이용자가 직접 설치한 단말 장비가 전기통신자재 형식승인 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내지 회사의 서비스 <u>기준에 부합하지 않음</u> 으로써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의 경우 2) APP 사용 권장사양에 부합하지 않는 스마트 기기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의 경우 (현행과 동일)
<u>제8조 (서비스의 내용)</u> (생략)	<u>제10조 (서비스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u> (현행과 동일)
<u>제9조 (서비스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u> (생략)	<u>제11조 (서비스 이용 중지)</u> (현행과 동일)
<u>제10조 (서비스 이용 중지)</u> (생략)	<u>제12조 (서비스 종료)</u> (현행과 동일)
<u>제10_1조 (서비스 종료)</u> (생략)	<u>제13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u> 1. 회사는 천재지변, 시스템(통신) 장애 및

(신설)	<u>점검, 서비스 양도 및 폐지(휴지)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u> <u>1)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공지(안내)를 합니다.</u> <u>2)회사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회원에게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합니다.</u>
(생략)	(현행과 동일)
<u>제 11 조 (서비스 이용정지)</u>	<u>제14조 (서비스 이용 정지)</u>
(생략)	(현행과 동일)
<u>제 11_1 조 (서비스 일시정지)</u>	<u>제15조의 (일시정지 요청)</u>
1.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u>일시이용중단 회수는 1년에 3회(1회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1년 동안 총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3개월 초과시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정상 상태로 환원 처리 됩니다. 착발신이 모두 중지 됩니다.</u>	1.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u>일시정지 횟수는 1년에 3회(1회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1년 동안 총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일시정지 중에는 착발신이 모두 정지되며, 3개월 초과 시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정상 상태로 환원 처리 됩니다.</u>
<u>제 12 조 (서비스 이용 해지)</u>	<u>제16조 (서비스 이용 해지)</u>
(생략)	(현행과 동일)
<u>제13조 (서비스 정지 이의 절차 및 이용책임)</u> (생략) 2.<u>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u>	<u>제17조 (서비스 정지 이의 절차 및 이용책임)</u> (현행과 동일) 2.<u>‘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u>

나 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전기통신사업자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 이용 책임 및 통화 기록 내용)(생략)

제 15 조 (요금의 종류 및 과금기준)
(생략)

5.회사는 물가 또는 원가의 대폭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요금의 변경이 불가피하는 등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요금의 변동을 서면 또는 온라인에 통지함으로써 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료를 익월 10일까지 청구합니다.

제 15_1 조 (표준 통화/문자/기타 요금 (VAT 미포함))

1.회사의 상품은 통화요금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으면 표준 통화요금을 적용합니다.

2.표준 시내 39원 / 3분, 시외 39원 / 3분, 이동전화 14.5원 / 10초, 전국대표번호 60원 / 1분, 특수번호 150원 / 3분 / Fax 45원

제 15_2 조 (표준 서비스 요금(VAT 미포함))(생략)

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회사’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서비스 이용 책임 및 보관)
(현행과 동일)

제19조 (요금의 종류 및 과금 기준)
(현행과 동일)

5.회사는 물가 또는 원가의 대폭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요금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요금의 변동을 서면 또는 온라인에 통지함으로써 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료를 익월 10일까지 청구합니다.

제20조 (표준 통화/문자/기타 요금(VAT 미포함))

1.회사의 상품은 통화요금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으면 표준 통화요금을 적용합니다.

2.표준 요금 : 시내 39원/3분, 시외 39원/3분, 이동전화 14.5원/10초, 전국대표번호 60원/1분, 특수번호 150원/3분, Fax 45원

제21조 (표준 서비스 요금(VAT 미포함))
(현행과 동일)

<u>제 16 조 (요금제의 변경)</u> (생략)	<u>제22조 (요금제의 변경)</u> (현행과 동일)
<u>제 17 조 (보증금)</u> 1. 회사는 일부 사용자에게 대하여 보증보험 증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정액제는 월 청구 금액, 종량제는 회선당 5만원으로 합니다.	<u>제23조 (보증금)</u> 회사는 일부 사용자에게 대하여 보증금이나 보증보험 증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정액제는 월 청구 금액, 종량제는 회선당 5만원으로 합니다.
<u>제 18 조 (요금납입책임자 및 의무)</u> (생략)	<u>제24조 (요금납입책임자 및 의무)</u> (현행과 동일)
<u>제 19 조 (체납요금 등의 징수 및 제한)</u> (생략)	<u>제25조 (체납요금 등의 징수 및 제한)</u> (현행과 동일)
<u>제 20 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u> (생략) 3.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 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 기한을 명시하여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회사는 <u>상기2항의 규정</u>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과불 또는 오불이 인정될 경우 그 요금이 이미 지불된 때에는 <u>제22조(과/오납 요금의 정산)</u>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러나 그 요금이 아직 지불되지 않은 때에는 10일 이내의 지불 기한을 다시 정하여 지불 의무자에게 지불 청구서를 재발송 합니다.	<u>제26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u> (현행과 동일) 3.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 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 기한을 명시하여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회사는 <u>상기 제2항의 규정</u>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과불 또는 오불이 인정될 경우 그 요금이 이미 지불된 때에는 <u>제28조 (요금의 반환)</u>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러나 그 요금이 아직 지불되지 않은 때에는 10일 이내의 지불 기한을 다시 정하여 지불 의무자에게 지불 청구서를 재발송합니다.
<u>제 21조 (불법 면탈요금의 부과)</u> 1.회사는 서비스 요금을 불법으로 면탈한 이용자에 대하여 면탈한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2.<u>1항의 규정</u>에 의하여 불법면탈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u>제27조 (불법 면탈요금의 부과)</u> 1.회사는 서비스 요금을 불법으로 면탈한 이용자에 대하여 면탈한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2.<u>상기 제1항의 규정</u>에 의하여 불법면탈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u>제 22조 (요금의 반환)</u>	<u>제28조 (요금의 반환)</u>

(생략) <u>제 22_1조 (요금의 환불)</u> (생략) 3. 회사의 요금제, 서비스, 부가서비스 금액이 아닌 별도의 충전금만 서비스 해지일 기준 1년 이내에 이용자가 회사로 요청이 있을 경우 환불이 가능하며, <u>환불되지 않은 충전금은 서비스 해지일 기준 1년이 경과되면 소멸되고 결제 시 사용한 결제 수단 및 자동이체 계좌를 통한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u> 4. <u>계좌 환불 시 가입자 본인의 계좌 및 자동이체 계좌로만 환불이 가능하며, 본인 외의 계좌는 법적으로 가족관계(확인 필요 서류 제출)를 증명할 수 있는 계좌에 한해 환불합니다.</u>	(현행과 동일) <u>제29조 (요금의 환불)</u> (현행과 동일) 3. 회사의 요금제, 서비스, 부가서비스 금액이 아닌 별도의 충전금만 서비스 해지일 기준 1년 이내에 이용자가 회사로 요청이 있을 경우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되지 않은 충전금은 서비스 해지일 기준 1년이 경과되면 소멸됩니다. 4. 환불은 결제 시 사용한 결제 수단 및 자동이체 계좌를 통한 환불을 원칙으로 하며, 계좌 환불 시 가입자 본인의 계좌 및 자동이체 계좌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본인 외의 계좌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필요서류 제출 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에 한해 환불합니다.
<u>제 23조 (회사의 의무)</u> (생략) 3-1.회사는 이용자가 발급받은 070 번호의 불법 스팸 사용의 용도를 제한하기 위해 DTMF 전송 및 통신사 가입확인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u>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u>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한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u>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u> 그러하지 않습니다. <u>제 24조 (이용자의 의무)</u>	<u>제30조 (회사의 의무)</u> (현행과 동일) 4. 회사는 이용자가 발급받은 070 번호의 불법 스팸 사용의 용도를 제한하기 위해 DTMF 전송 및 통신사 가입확인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인 없이 <u>제3자에게 제공,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u>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한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u>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u> 제공할 수 있습니다. <u>제31조 (이용자의 의무)</u>

3.이용자는 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이용자는 <u>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u> (생략) (신설) (신설) (신설) <u>제 24_1조 (통지 및 송달)</u> 1.이용자는 회사가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활용 하여 <u>이용자에게 각종 통지를 송달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u> 1)공시문, 회사의 규칙 및 회사와 이용자의 협의 등. 2)사이트내 메시지, 팝업 메시지 등 3)<u>이용자가 회사에 남긴 연락방식인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서신등</u>	3.이용자는 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이용자는 <u>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u> (현행과 동일) <u>8.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u> <u>9.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 등록 후 등록된 번호로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u> <u>10.이용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번호변작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u> <u>제32조 (통지 및 송달)</u> 1.이용자는 회사가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u>이용자에게 각종 통지를 송달합니다.</u> 1)공시문, 회사의 규칙 및 회사와 이용자의 협의 등. 2)사이트 내 메시지, 팝업 메시지 등 3)<u>이용자의 이메일, 전화, 문자, 서신 등으로 송달</u>
--	--

2.회사는 상술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통지를 발송하며, 발송이 성공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발송한 서면통지는 제공된 연락 주소에 따라 우편으로 보낸 날로부터 다섯번째 날을 송달일로 간주합니다.

제 25조 (양도 금지)

제 26조 (이용자 보호)

- 1)전기 통신 관련 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 2)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27조 (손해배상)

1.회사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회사에게 통지한 때 또는 이용자가 통지하기 전에 회사가 인지한 때로부터 2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27조 2항에 의거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28조 (서비스 품질 유지 및 향상 등)

- 1)제 7_1조, 제 23조에 해당된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용자 환경으로 인한 장애 발생 및 사용 교육 등의 목적일 경우 15_2조 9항의 비용이 청구 됩니다.
- 2)발생된 비용의 경우 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 후 비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상술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통지를 발송하며, 발송이 성공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발송한 서면통지는 제공된 연락 주소에 따라 우편으로 보낸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다섯번째 날을 송달일로 간주합니다.

제33조 (양도 금지)

제34조 (이용자 보호)

- 1)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보호)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 2)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5조 (손해배상)

1.회사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회사에게 통지한 때 또는 이용자가 통지하기 전에 회사가 인지한 때로부터 2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손해배상)와 본조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36조 (서비스 품질 유지 및 향상 등)

- 1)제 8조 서비스 이용장애, 제31조에 해당된 회사의 의무가 아닌 이용자 환경으로 인한 장애 발생 및 사용 교육 등의 목적일 경우 제21조 제9항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 2)발생된 비용의 경우 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 후 비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설)

제37조 (불만처리)

1. 불만사항은 일반전화, 이메일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2. 불만사항 처리는 민원 담당자가 직접 전화하여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메일 및 서면에 의한 민원접수 처리는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처리합니다.

불만 형태	유형	원인	처리절차	처 리 기 간
서비 스 관련	통신 및 서 비스 장애	회사 귀책	사과 및 품질개선	즉 시 /1 일
		회원 귀책	대고객 설명	즉 시 /1 일
요금 관련	청구요 금 이 의	회사 귀책	과금전 : 비과금 요청 과금후 : 환불	즉 시 /1 일
		회원 귀책	대고객 설명	즉 시 /1 일
기타	기타 이의	회사/ 회원 귀책	사과 및 품질개선, 대고객 설명	즉 시 /7 일

제29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 30조 (불가항력)

제 31조 (분쟁 해결)

제38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39조 (불가항력)

제40조 (분쟁 해결)

제 32조 (보증보험 가입)

회사는 파산 등 그에 상응한 조건하에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제 33조 (신의 성실의 원칙)

제 34조 (기타 계약과의 관계)

제 35조 (단말기에 대한 소유권 및 증명)

제 36조 (단말기 분실 및 손실)

1.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단말기 및 헤드셋 분실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단말기 분실 및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손해 배상의 한도는 단말기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3.회사에서 제공하는 IP Phone, Gate way 사용 모델은 이용자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내에서 유동적으로 변경 됩니다.

IP-255W79,200원(V.A.T 포함가)

IP-460S79,200원(V.A.T 포함가)

IP-460GW158,400원(V.A.T 포함가)

IP-460PW158,400원(V.A.T 포함가)

MWP-2500W237,600원(V.A.T 포함가)

MTA-G631W79,200원(V.A.T 포함가)

SIP-T23GW220,000원(V.A.T 포함가)

IPPhone헤드셋 ₩ 44,000원 (V.A.T 포함가)

Gateway

1portW132,000원(V.A.T 포함가)

2portW143,000원(V.A.T 포함가)

4portW495,000원(V.A.T 포함가)

8portW660,000원(V.A.T 포함가)

제41조 (보증보험 가입)

회사는 파산 등 그에 상응한 조건하에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4(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제42조 (신의 성실의 원칙)

제43조 (기타 계약과의 관계)

제44조 (단말기에 대한 소유권 및 증명)

제45조 (단말기 분실 및 손실)

1.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단말기 및 헤드셋 분실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단말기 분실 및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손해 배상의 한도는 아래에 표시한 단말기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회사에서 제공하는 IP Phone, Gate way 사용 모델은 이용자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내에서 유동적으로 변경됩니다.

IP Phone

모델명	금 액
IP-255	79,200 원
IP-460S	79,200 원
IP-460G	158,400 원
IP-460P	158,400 원
MWP-2500	237,600 원
MTA-G631	79,200 원
SIP-T23G	220,000 원
IP Phone 헤드셋	44,000 원

Gate way

모델명	금 액
1 port	132,000 원
2 port	143,000 원
4 port	495,000 원
8 port	660,000 원

<u>제37조 (사설전화교환기의 보안조치 사항 : 해킹으로부터 시스템 보호조치)</u> <u>1.사설전화교환기를 운영하는 가입자는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이 해킹 또는 교환시스템 운용자에 의해서 전화번호 임의변작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u> <u>1-1.8자리 이상의 관리자 접속 패스워드 설정 (6개월에 1회 패스워드 변경)</u> <u>1-2.사설전화교환시스템을 외부인터넷에 직접 노출 금지</u> <u>1-3.사설전화교환시스템의 주기적인 보안 패치</u> <u>1-4.기타 보안에 필요한 조치</u> <u>2.사설전화교환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사설교환기 운영자에게 있습니다.</u>	(삭제)
<u>제38조 (발신번호 변작 금지)</u> <u>1.2015년 4월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u> 4-5.가입자는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하여 정지/해지가 될 경우, <u>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된 모든 상품의 금액에 대하여 환불을 진행하지 않습니다.</u>	<u>제46조 (발신번호 변작 금지)</u> <u>1.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u> 5)가입자는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하여 정지/해지가 될 경우, <u>'회사'</u>와의 계약된 모든 상품의 금액에 대하여 환불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u>제39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u> (생략)	<u>제47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의 제한)</u> (현행과 동일)
<u>제40조 (이용정지)</u> (생략)	<u>제48조 (서비스 이용 정지)</u> (현행과 동일)
<u>제40_1조 (발신번호를 변작한 송신인의 서비스 제공 중지 절차)</u> (생략) 2)<u>전기통신사업자</u>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기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u>제49조 (발신번호를 변작한 송신인의 서비스 제공 중지 절차)</u> (현행과 동일) 2)<u>'회사'</u>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기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

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8조에 조치에 따라 이용자가 계약일이 남아 있어도, 일체의 환불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후불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정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요금을 청구 합니다.

2.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1)제10조 및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나)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자료

다)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2)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계약해지)

1.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제40조4항이 3개월 이내 총 가입회선의

(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38조에 조치에 따라 이용자가 계약일이 남아 있어도, 일체의 환불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후불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정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요금을 청구합니다.

2.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1)제10조 및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나)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자료

다)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합니다. 다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0조 (계약해지)

1.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제48조 4항이 3개월 이내 총 가입회선

1/5를 초과 하는 경우	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u>제42조 (이용자의 의무)</u> (생략)	<u>제51조 (이용자의 의무)</u> (현행과 동일)
<u>제43조 (회사의 의무)</u> (생략)	<u>제52조 (회사의 의무)</u> (현행과 동일)
<u>제44조 (이용권의 양도.승계)</u> (생략)	<u>제53조 (이용권의 양도.승계)</u> (현행과 동일)
<u>제45조 (계약의 해제.해지)</u> (생략)	<u>제5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u> (현행과 동일)
(신설)	<u>4.기타 이용자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 에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심각한 위법사항, 침해활동 등으로 회사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u>
(생략)	(현행과 동일)
<u>제45_1조 (계약의 해지의 따른 위약금)</u> (생략)	<u>제55조 (계약의 해지의 따른 위약금)</u> (현행과 동일)
<u>3.제45조 항목 외의 이용자 요청으로 계약 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u>	<u>4.제54조 항목 외의 이용자 요청으로 계약 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u>
4.위약금 산정은 <u>표준요금(15_1조, 15_2조)</u> 을 기준으로 합니다.	5.위약금 산정은 <u>표준요금(제20조, 제21조 의)</u> 을 기준으로 합니다.
5.위약금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6.위약금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IP-Phone위약금 "(단말기 금액 ÷ 계약기 간) × 잔여 계약 개월"	1)IP-Phone 위약금 "(단말기 금액 ÷ 계약 기간) × 잔여 계약 개월"
2)통화료 위약금 "사용 개월 × 할인된 통 화요금"	2)통화료 위약금 "사용 개월 × 할인된 통 화요금"
3)서비스 위약금 "(표준 서비스 요금 - 서 비스 계약금액) × 사용 개월"	3)서비스 위약금 "(견적서상 기본 가격 - 서비스 계약금액) × 사용 개월"
	7. 55조 6항 3호의 '견적서상 기본 요금'이 확인 불가능한 경우 본 이용약관 21조 5 항 서비스 상품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 됩니다
<u>제46조 (번호이동성)</u>	<u>제56조 (번호이동성)</u>

<u>제47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개인위치 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u>	<u>제57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개인위치 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u>
<u>제48조 (문자메시지 이용자 의무)</u>	<u>제58조 (문자메시지 이용자 의무)</u>